

1. 운 용 총 칙

회계년도 : 2010년
 예산차수 : 본예산
 회계구분 : 재해구호기금

① 기금설치 개요

- (1) 설치근거 : 재해구호법 제14조,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
- (2) 설치목적 : 이재민 구호실시
- (3) 설치년도 : 1992년

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- (1) 기금사업의 목표 :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 생활안정 도모
- (2)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 :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응급구호 실시

③ 기금조성 및 운용

(1) 기금조성 현황

(단위 : 천원)

2009년도 말 현재액 ㉑	2010년도 조성계획			2010년도 말 현재액㉒ = ㉑ + ㉓	비 고
	수입 ㉔	지출 ㉕	증감 ㉖ = ㉔ - ㉕		
108,721,111	3,862,906	3,000,000	862,906	109,584,017	

(2) 자원조성 : 법정적립금 및 이자수입

- (3) 지원기준 : - 사망자구호금 : 세대주 10,000천원, 세대원 5,000천원
- 부상자구호금 : 세대주 5,000천원, 세대원 2,500천원
- 주택파손(세대당) : 전파 9,000천원, 반파 4,500천원

- 침수주택 수리 : 세대당 1,000천원
- 세입자 보조금 : 세대당 3,000천원
- 생계구호비 : 1인 1일 6천원 1~2개월

(4) 지원대상 :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